



(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학교 폭력 예방

교사용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contents

01 학교폭력이란?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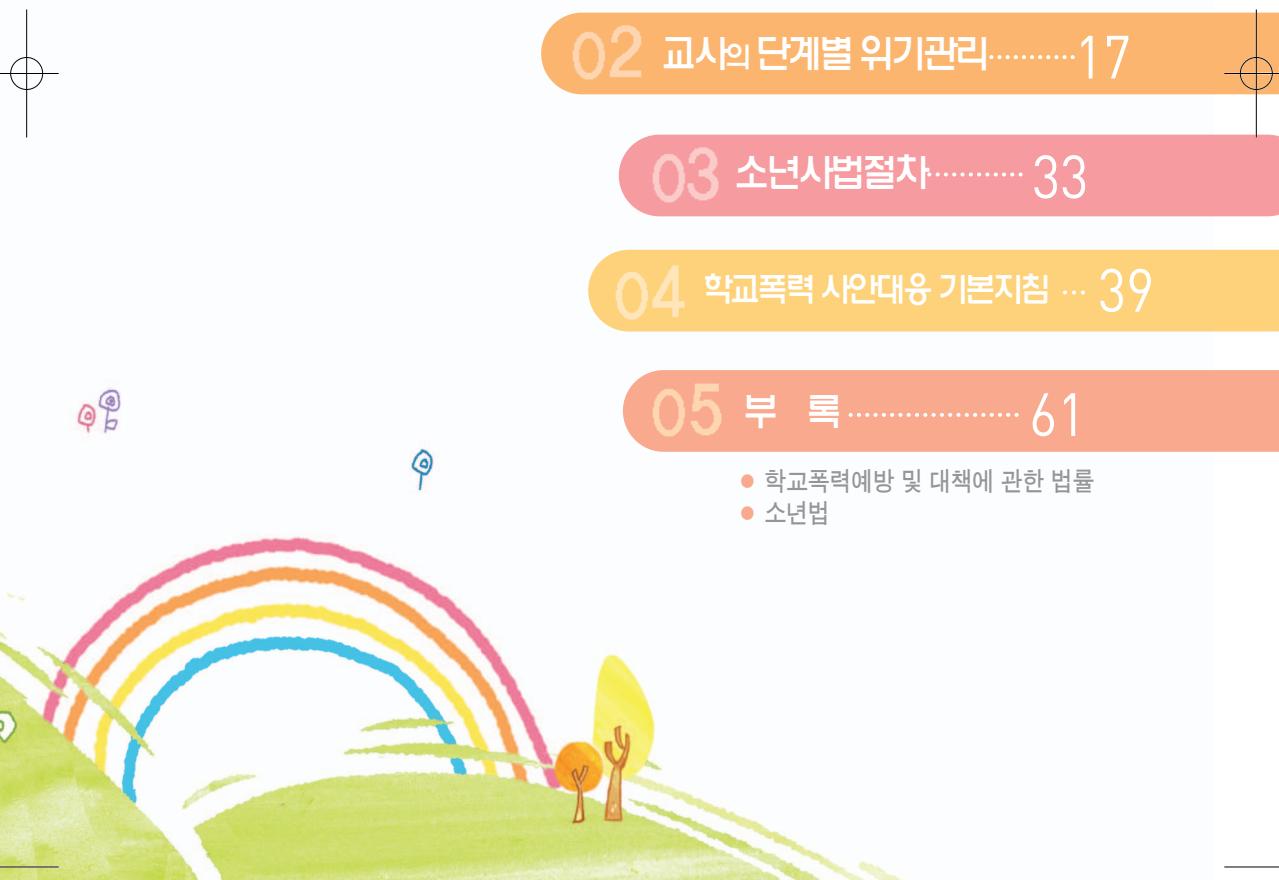
02 교사의 단계별 위기관리 17

03 소년사법절차 33

04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 39

05 부 록 6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소년법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01

학교폭력이란?



대구OO중학교 피해자의 유서

3월 중순에 OO라는 애가, ~~같이~~ ~~교제를~~ ~~하게되고~~ 했는데 ~~그~~ 형편을 하다 차우로,
그리고 형편에 OO라는 애가 그때 과태 때문에 짐승으로 떨어진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쓴 이후 24시간
그리고 제가 그때 과태 때문에 짐승으로 떨어진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쓴 이후 24시간
의 동안 제가 그때 과태 때문에 짐승으로 떨어진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풍기는 딱히 있고, 그에게 짐승
제가 출석명세장을 받았어요. 제수장을 가지고 해서 일 아동수가 대원들은 다하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상해하고 달려도 더욱 깨하고 오는 상처를 고는 축제를 사이고, 날이 갈수록 더 상해하고
제가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 예전과는 다른OO라는 애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기억하는 양은 더하고, 때가는 생호하고, 수련장을에는 공부하지 않고, ~~수련장을~~ 제 딱히하고, 축제를하고
울고고 울고, 모른다고, 안소를 먹이고, 육상가족은 웃고, 춤제집을 공연 토론회를 다니며 까우고,
한국에서도 춤과 춤하고, 온갖 춤복을 입고 배우고, 시어는 등 그런 것은 많아요. 12월에 춤에서 제는
한국하고 몇 번이나 경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일어나, 아파가 많아서 자주 딱 앓아요. 그런데이
날이 갈수록 상해지자 제도 절약 더하겠어요.

제가 한동도 아파해
매번 날을 듣고, ~~연습~~ ~~하게~~ 꾸준히 듣고, 매번 앞선 시설을 끌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있다면
생각에 떠올리고, 떠올리고, 그리고 책 한 권 많아도 해서 춤과 춤하고 ~~제가~~ ~~제가~~ 춤과 춤하고,
제가 가족들이 춤과 춤하고, 저도 춤과 춤하고,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볼게요,

—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박씨

P.S.

복도에서 흔남도 경계라며 나를 몰아온 부모님들끼리 지금 전투체육,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유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소망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OO중학교 사건의 문자메세지



이 문자메세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소망하는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학생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

과거의 학교폭력

- ① 폭력서클이 조직적·집단적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주류
- ② 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이 많음
- ③ 1회성 단기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음
- ④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짐
- ⑤ 주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
(자기학교 학생은 오히려 보호)

최근의 학교폭력

- ①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당 수 혹은 소그룹이 따돌림 등 집단으로 행하는 형태로 변화
- ② 강제적인 심부름(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협박, 집단 따돌림, 놀림 등 정신적 폭력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
 -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등을 활용하여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집단적으로 즐기는 사례가 증가
- ③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계속적·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 ④ 주로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초등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
- ⑤ 학교 현장 내에서 많이 발생

3

일반폭력과 학교폭력의 차이점은?

1

일반폭력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 · 학급이라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정기간 가해자, 피해자가 마주치게 됨

2

일반폭력은 폭력의 당사자 외에는 제3자가 알기 어려우나, 학교 폭력은 당사자 외에도 같은 학교 · 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쉽게 알려지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속칭 ‘빵 셔틀’의 피해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강요받음

3

일반폭력은 연속성이 없으나,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끊임없이 특정 학생에 대해 행해지고, 문제의식 없이 학생들 사이에 학교 내 하나의 잘못된 문화처럼 형성될 수 있음



4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종류에는 주먹이나 발이 오고 가지 않는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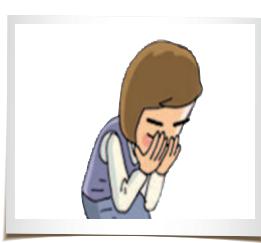
언어적 폭력



금품 갈취, 강요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1. 신체적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감금죄)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상해죄, 폭행죄)
- 강제(폭행·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죄)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

2. 언어적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죄)
→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놀림, 병신, 바보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죄)

3. 금품갈취, 강요

- 속칭 뺑(금전) 뜯기(공갈죄)
- 옷, 문구류 등 빼앗기(공갈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죄)
→ 속칭 뺑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4.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강요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모욕죄)
- 빙정거림, 면박주기, 골탕 먹이기 등(모욕죄)

5.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강제적 성행위, 유사성교행위, 성기에 이물질 삽입행위(성폭력범죄 등)
-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성폭력 범죄 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모욕죄 등)
 - ※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6.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명예훼손죄 등)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명예훼손죄 등)
-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명예훼손죄 등)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 전송(협박죄 등)

→ 대부분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5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면사과, 학교내·외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또한 피해학생이 부담한 치료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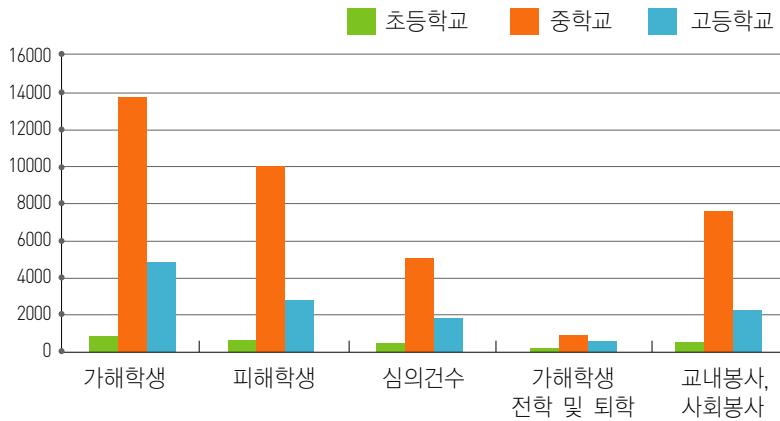
• 이와 별도로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벌금, 소년교도소 수용 등)이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을 받게 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먼저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6

학교폭력 발생현황



2010년을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13,748명이고, 그 가운데 중학생이 10,363명(75.4%)으로 전체의 3/4 정도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가 10,567건(76.9%)으로 전체의 3/4 정도입니다.

가해학생 수는 19,949명이고, 그 학생들에게 내려진 선도 및 징계조치는 총 19,553건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내봉사가 36.9%로 가장 많고, 사회봉사(17.8%)와 특별교육(17.6%), 서면사과(9.5%), 출석정지(7.1%), 전학(5.8%), 접촉금지(4.2%), 학급교체(0.7%), 퇴학(0.5%) 등의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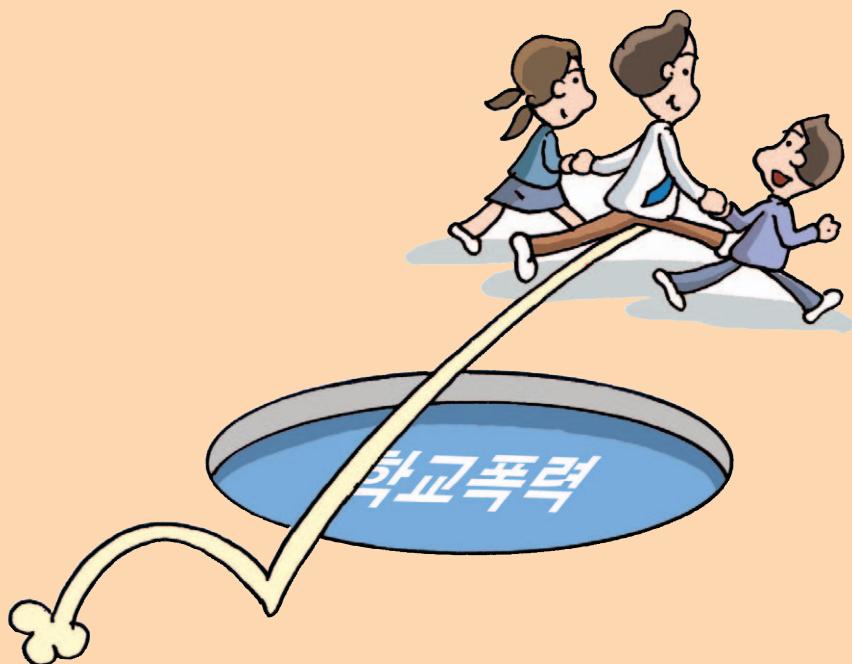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자살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2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교사의 단계별 위기관리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특징

제정 : 법률 제7119호 2004. 1. 29(11차 개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적용 되는 일반법으로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형사 · 민사상의 절차 와는 별개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입니다.

학생 간의 분쟁을 사법처리 이전에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학교내에서 기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2 교사의 대처방안 3단계

사전 관리

- 위기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여 방지



발생시 관리

- 위기발생직후 피해 최소화
- 신속한 해결
- 안전상태로 조기회복



사후 관리

- 2차 피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 위기교육 활동



3

사전관리의 단계

예방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예수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1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 ➔ 학기 별 1회 이상 실시

2

수시교육, 집중교육, 주기적 교육 ➔ 대처자세 생활화

3

학부모에게 예방교육 홍보물 배포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의 내용(주요내용)

-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발생시 처리
 - 특히 학교폭력은 범죄임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함
- 피해학생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함
 - 부모, 교사, 친구, 국번없이 117번
- 학교폭력 목격자는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음
 - 적극적으로 개입(멈춰-STOP), 신고, 피해자와 친구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간, 강사 선정, 강사료, 강의방식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하되, 전체 학생 대상 특강 방식은 지양하고 학급단위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각 시·도 교육감은 각 급 학교의 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여부에 대해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예방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실시해야 하며, 특히 학부모들은 일과 후 저녁시간으로 계획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가정통신문과 이메일을 통한 간접교육도 병행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에 참가하거나 학교자체 연수를 실시합니다.

예방상담

1 표면화되지 않은 피해자 발견 ➔ 확대 방지 · 개입

2 전문적 상담교사 배치 ➔ 담임교사 역할 중요

3 개개인 학급 생활파악 ➔ 선도 필요 학생 적극적 면담

예방 상담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어 있으나 아직 크게 표면화되지 않은 침묵하는 피해자나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더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임교사들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가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고 개인 상담으로 학생 개인이 겪고 있는 학급생활의 어려움과 적응 상태를 알아야 하며 학급 분위기를 파악하여 학생 개인이 학급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발생 시 관리의 단계

- 학교폭력 발생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교사의 책임문제 발생

- 특히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신하려고 하기도 하나 법적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을 처리

- 설치기구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

실제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학교 폭력을 기능하면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사건 처리건수에 따라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를 선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 학교의 차부를 알리게 된다는 생각으로 학생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2010년도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는 총 7,823건으로 확인되지만 미신고·미심의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학교폭력 신고·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규명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학교폭력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발생 시 처리 절차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보고하고,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지 •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즉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p>〈피해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p>〈가해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주인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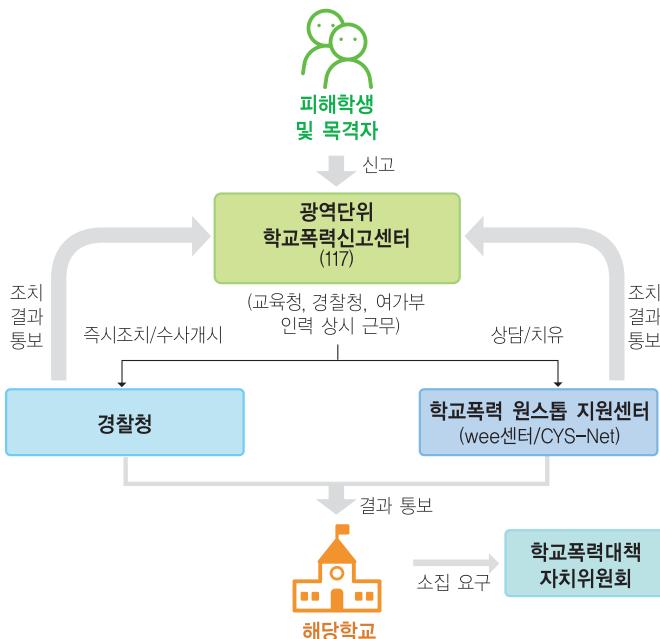
사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가·피해학생 심층상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加害者와 피해자 확정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가·피해학생 부모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처리방향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여부 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처리방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 加害学生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자치위원회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加害者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학교장

조치 실행 및 사후 관리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피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
- 가·피해학생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학교폭력 신고센터 일원화



-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
- 1개소에 3~6명이 한 팀이 되어 상시 근무하며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상담기관 연계 · 배분 실시
 - 신고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
 - 경찰청 및 상담센터는 신고센터로부터 이송을 받은 사안의 최종처리 결과를 해당 학교 및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통보
 -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사건 종결

학교폭력예방법상 설치기구



설치기구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하는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계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징계에 대한 결정사항을 학교장에 요청, 학교장이 징계 부과
- 분쟁조정 기능
 - 손해배상 관련 합의조정
 - 분쟁조정 관련사항 조사기능
 - 분쟁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없음

설치기구 중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하는일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전 사전 심의
 -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 예방 활동
 -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 ●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출석일수 산입, 성적평가 등)

- ① **심리상담 및 조언** : 전문상담가들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폭력이 심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 향상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 ②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 · 집 ·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의 경우 심리상담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학생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하면서 심리적 · 신체적 진료나 치료를 받게 합니다.
- ④ **학급교체** : 일시보호 이외에도 학급 내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⑤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다른 조치들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자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청 시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서면 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의무화**

... 학내 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퇴학처분

- ①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학교폭력에 대해 사과하도록 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1차적으로 사과를 통해 서로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고 해서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학생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나 신고 · 고발학생에 대해 접촉이나 협박을 금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원이 “OO의 100m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 ③ **봉사명령, 출석정지, 학급교체 및 전학** : 가해학생이 학교 내 혹은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반을 바꿀 수 있고 심하면 전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 ④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⑤ **퇴학처분** :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므로 불가능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징계로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가해학생을 퇴학시킬 수도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로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각각의 조치는 병과할 수 있고, 특히 ②, ③번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도조치가 긴급한 경우



교내 분쟁조정

-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 시작

- 분쟁조정 관련사항 조사 및 손해배상 관련 합의 조정
-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고소·고발·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중지

- 1개월 이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측에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요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1월 이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분쟁조정을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분쟁조정 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해결의 단서는 증거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조정 또는 이후 소송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신속하고 타당성 있는 해결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 자료

피해에 대한 일체의 진술서, 피해학생의 일기장,
주변 친구의 진술서, 병원 진단서



사진 자료

상처가 있으면 즉시 촬영



사이버 자료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녹취 자료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녹음
(대화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임)



휴대폰 자료

문자·음성메세지 보관

※ 물적 증거·목격자 진술이 없고, 기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더라도 피해자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현행법상 기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5 사후관리의 단계



피해학생

- 수호 천사
- 등 · 하교 함께하기
- 전문상담기관 소개

-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조속히 치유 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우선 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수호천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동급생이나 상급생을 짹 지워주어 항상 챙겨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학부모나 교사, 수호천사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상담기관을 소개시켜주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중 ①기준 ‘학교폭력예방법’에 있던 피해학생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 ② 학교장이 학교폭력 발생 인지 즉시 피해 학생이 심리상담과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③ 심리상담, 치료, 일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자치위원회를 거쳐 피해학생이란 사실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를 기해학생의 부모에게 구상하게 하여 신속한 지원 가능 ④ 기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급분리 배정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해학생

- 지역인사 멘토제
- 사제동행 등산
- 학부모 봉사
- 운동팀 구성

- 가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인사 멘토제’, ‘사제동행 등산’, ‘학부모 봉사’ 등이 있습니다.
- ‘지역인사 멘토제’는 가까운 곳에서 항상 지켜보며 가해학생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역인사를 선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 ‘사제동행 등산’은 가해학생과 교사 사이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 ‘학부모 봉사’는 가해학생이 처벌로 사회봉사 등을 명령받았을 때, 가해학생의 부모도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깊게 참회하는 부모의 모습으로부터 아이들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 또 가해학생 및 선도가 필요한 학생을 모아 운동팀을 구성하여 교내·외 경기를 진행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규칙 준수와 소속감, 애교심을 고양시켜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시·도 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 운영하고, 학부모 등의 없이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03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소년 사법절차



소년보호제도

보호처분(소년법)

- ▶ 개선가능성이 많은 소년에 대해 처벌하기 보다는 보호·교육하여 사회에 복귀
- ▶ 장래에 영향 미치지 않음
- ▶ 수사경력자료로 관리
(소년보호사건으로 표기)

형사처벌(형법 등)

- ▶ 범죄에 상응한 처벌 / 특히 자유형은 범죄자를 격리 교정하여 재범을 예방
- ▶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적용
- ▶ 범죄경력자료로 관리
(구체적인 형명·형기 표기)

사건이 중대하지 않거나 교화·교육상 소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가정(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진 사건에 대해 가정(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보호처분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 등의 전문가들이 문제된 소년을 수용, 소년의 자질을 분류 심사하여 법원에 그 결과를 보내주어 재판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보호처분이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것은 벌금, 징역 같은 일반 형벌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연령별 형사처벌 vs 보호처분

- 10세 이상 소년은 보호처분 가능, 14세 이상 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



10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불가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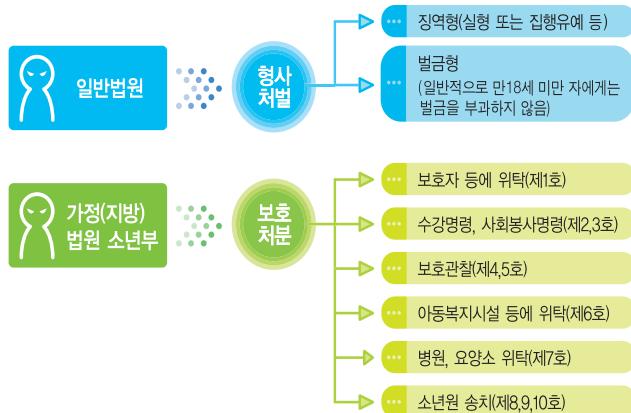


14세 이상~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처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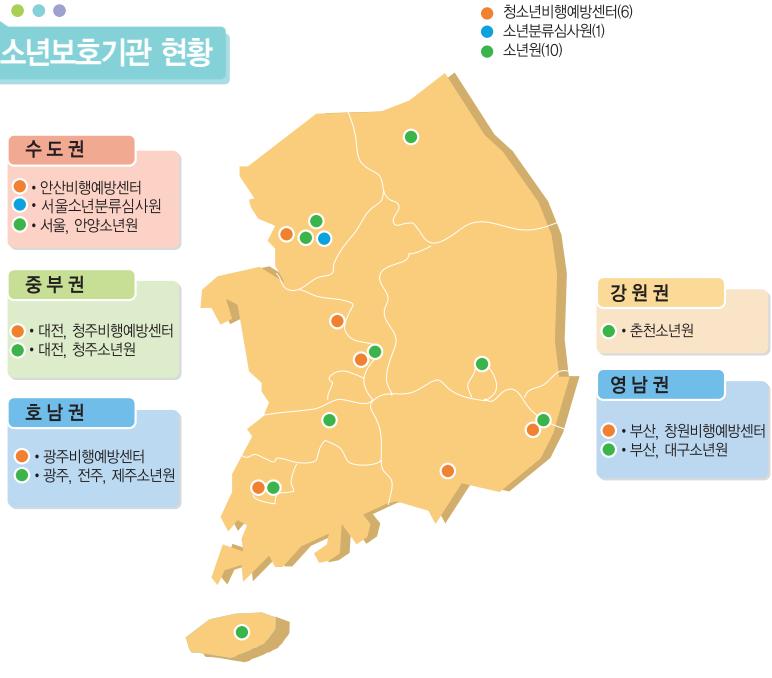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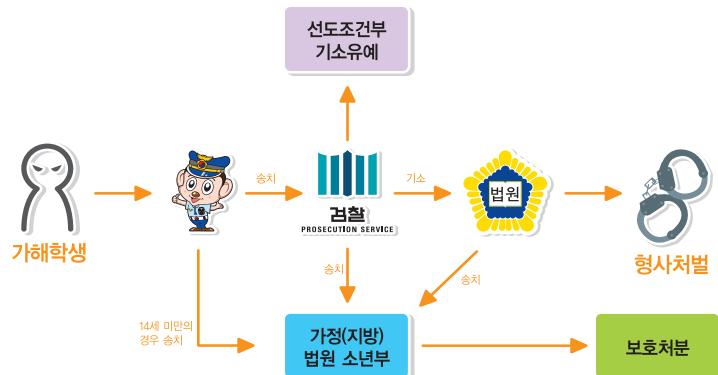


- 보호처분을 통해서 부과되는 처분에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가정(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만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결정하면, 단기의 경우에는 1년간을, 장기의 경우에는 2년 동안 법무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교육과 상담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8호~10호의 소년원 송치 처분은 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년)는 각각의 수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사안이 중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거나 교화·교육상 소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해서 일반 형사처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법원을 통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가정(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도 보호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서 다시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중대하여 가정(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의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일반법원을 통해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앞에서 말한 대로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년보호기관 현황



소년사건 처리절차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04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지침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I)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 기본 대응요령

학교장은 신고 받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함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조치 방안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함
-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내 상담실 또는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함
 - 특별교육은 상담교사 주관으로 상담, 교과 자율학습을 포함하여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함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가.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였을 때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나. 조치 방안

- 담임교사가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
- 학교실정에 맞는 또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
-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지도

또래 프로그램 개요

구 분	프로그램 특징
또래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가 상담자가 되어 동료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 해결 • 갈등의 이상징후 발견 및 예방에 초점 <p>※ 서울 신연중 : 또래상담반 운영 결과 폭력 발생 건수 절반 이하로 감소</p>
또래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에서 신뢰(추천 등)받는 학생이 훈련을 통해 중재자가 되어 학생 간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전문상담사 등 갈등조정전문가는 이를 지원 • 갈등 발생 후 조정 및 화해에 초점 <p>※ 인천 연수초 : '갈등 원원프로젝트' 운영 결과 학생 간 갈등문제 해결</p>
학급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상황 발생시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학급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갈등해결 모색(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년총회 운영 가능) • 노르웨이 : 학급총회가 중심이 되는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60% 이상 감소
학생자치 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경미한 학칙위반 등의 사안에 대해 상·별점제와 연계하여 학생 스스로 변론하고 자율적 징계 실시 <p>※ 경기 행신고 : 자체 학생 번호인단 조직 등 '행신 로스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발표력·논리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 발생</p>

3.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가. 적용 대상

-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 사안

나. 조치 방안

-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보고 받은 즉시 사안의 경증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선도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주인을 받아야 함

❖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선조치

-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 학교에서의 봉사
-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 사전 선도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 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함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조치를 취한 후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함

II)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장의 책무

1. 학교폭력 발생사안에 대한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의 보호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

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보상



1) 피해학생 보호조치시 유의사항

-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보호조치 실행
 - 피해학생 보호자가 다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재심의 절차에 의해 보호조치를 실행할 수 있음
-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피해학생이 장·단기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정 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등·하교시 보호, 전문상담기관 연계 치료 등 피해학생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학교지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이 부담하여야 함

-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 후, 구상권 행사 가능
 - ※ '12.4.1 기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
-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의 비용부담 관련,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안내

3) 상급학교 진학시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과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통보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피해보상



1)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자치위원회로부터 다음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자치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 사회봉사
- 학급교체
- 전학

-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기간과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의 경증 및 가해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함
 - 특별교육은 상호존중과 관계능력향상을 위한 소통의 기술, 분노조절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정서 장애의 경우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하도록 함
 - 특별교육 실시 중 가해학생이 학습에 있어서 다른 학생에 뒤처지지 않도록 배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한 후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별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2)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9항)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실시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
 -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 통보
 - 재 통보시에도 불응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 ※ 특별교육 불응시,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3)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조의 3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명단을 시·도교육감(고등학생) 또는 교육장(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통보
-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구 또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 실시(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불요)
 - 이후,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재전학하는 것은 금지

4)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조치 거부 및 회피에 대한 처리

- 관련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제11항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조치별	처리 방법
제1호 (서면사과)	거부 및 회피를 하는 경우 재심 절차없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제2호 ~ 제7호	거부 및 회피를 하는 경우 재심 절차 없이,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② 자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거나, ② 자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다. 학교폭력 사안의 실태조사를 위한 조치

-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원의 사안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를 적극 지원해야 함
- 학교장은 조사 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전문조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전문조사관은 시·도별로 4~5월 중 지정될 예정이며,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행위를 부인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
- 조사 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시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2. 학교폭력 사안 대응체계 구축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둠

[자치위원회 심의 사항]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체계 구축
- ② 피해학생의 보호
- ③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임기의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를 구성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임기 2년)
- 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① 해당 학교의 교감
- ②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 대표
- ④ 판사, 검사, 변호사
- ⑤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 ⑥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위원 위촉시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고,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함. 특히, 학부모 대표 위촉시 의사나 법률전문가인 학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 운영 원칙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사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함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 ①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⑤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는 일과후 개최를 원칙으로 함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여야 함

○ 자치위원회의 개최

- 중대한 사안은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우선 처리 후 학교장과 자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최일을 결정함
-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함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경우]

- 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강금, 약취 · 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 ② 3주 미만의 진단이라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③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
- ④ 피해학생 · 가해학생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 ⑤ 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사안의 경우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 후 종료하고, 자치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

- 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출석
 - 성폭력, 따돌림 등의 사안과 같이 기해학생(보호자)과 피해학생(보호자)의 대면 접촉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출석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가해학생 측이 진술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진술시 상대방을 퇴실시키는 등의 방안 활용
- 분쟁의 조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8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 조정절차가 중지됨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구성, 상시 운영 해야 함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사무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함

3. 기타 학교장의 의무

가. 학교폭력 사안 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법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8조(분쟁조정)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고의 방법 및 절차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

- 학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함
 - 신고, 전수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교폭력 단체 결성의 징후가 파악되어 시·도교육청, 경찰 등에서 해당 학교폭력 단체 해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비밀누설 금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3. 학교폭력 예방 체계 구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수립

○ 기본 원칙

- 학교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연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함
-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실태, 대처방안 포함)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징후 감지 및 학부모 지도요령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학부모 교육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중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학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

-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운영

- 단순 집합식 교육이 아니라 UCC 경진대회, 학급회의, 역할극 등 체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야 함
- 국어, 도덕, 사회, 예술, 체육 등 인성교육 관련 교과의 정규수업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주제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학교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실정에 맞게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 등의 또래프로그램 운영

나.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개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폭력 가·피해 징후 학생에 대해 예방적 조치 시행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 실시 대상

- 2012년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2013년 이후 : 별도의 지침에 따라 특정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유의사항

-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가·피해 징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실, 상담실(Wee 클래스),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사전에 구축

※ 학생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매뉴얼) 참조

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기 초에 담임교사의 집중적인 학생·학부모 상담, 담임교사가 주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계획을 수립
- 담임교사가 조례 및 종례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담임교사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도록 지도
- 학생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거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로 배치
※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 지침’ 참조(별도 송부)
- 담임이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
- 그 밖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III)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사의 책무

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 및 피해학생·신고학생 보호

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

○ 격리의 목적

- 가 · 피해학생간 2차적인 폭력사태의 예방
- 사안조사를 위해 가 · 피해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 회복

○ 격리의 방법

- 사안조사 기간 중 가 · 피해학생이 서로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맞게 사전에 격리 방안 마련
- 피해학생이 상담기관, 병원, 외부 쉼터, 자택에 머물게 되는 경우, 출석 일수에 산입하고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

나. 피해학생 보호

○ 신속하게 보건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학생의 피해 상태를 파악한 후 조치

- 가벼운 상처의 경우 학교 보건실에서 1차 치료를 받도록 조치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도록 함
- ※ 보건교사의 1차 진단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위급한 경우 즉시 119 연락
- 성폭력 피해학생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증거를 보존하여 경찰에 신고
- ※ 성폭력의 경우 담임교사 혼자 증거를 파악,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과 협조하여 처리함

유의 사항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 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

다. 신고학생 보호

- 신고학생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 등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신고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세밀하게 조치해야 함

2.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및 해당 학부모 면담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해야 함. 단,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해결을 완료한 후 전담기구에 신고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전화, 구두보고 등으로 할 수 있음

나. 사안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 하에 진행

- 피해학생 면담
 - 가해학생이나 다른 학생이 모르게 진행하고, 피해학생이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피해의 유형,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실, 가해학생 명단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 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어려워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지원을 받도록 함
- 가해학생 면담
 - 피해학생 면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진행함
 - 집단폭행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 학생 모두를 한꺼번에 불러 다른 장소에서 일제히 조사하여 상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함
 - 피해학생을 보복할 경우,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킴

다. 해당 학부모 면담 : 1차 사안조사를 마친 후 면담 진행

- 학부모 면담은 면대면 1:1 면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
- 면담 일시, 면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통보 함
- 학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이나 판단이 섞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사실” 위주로 이야기해야 함

구 분	면담시 유의사항
피해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 학부모의 아픈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안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 담임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의 격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함 • 피해 사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 상담기관 등 안내 • 필요시,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할 수 있음을 안내 ※ '12.4.1. 기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
가해학생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 사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 • 피해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함 • 피해학생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피해학생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서는 안됨

3. 사후 생활지도

가. 피해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
- 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때까지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의 상담전문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에 복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생활지도 필요
-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란 등에 충분히 기록

【예시】(인성요소) + 구체적인 활동사항 기재

* (규칙 준수) '12.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5호에 의한 징계조치를 받아 성실히 참여하였고, 특히 Wee 센터의 치유·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게 되었음. 또한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또래 상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중재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급우간의 신망이 높음 (봉사시간 10시간).

IV)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평상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고접수, 사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교장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구성, 상시 운영해야 함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사무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2.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외부인으로부터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비공개)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통보방법 등 통보 사실을 기록함
학교폭력 사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이 경우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 • 책임교사 : 사안의 조사를 총괄하며, 조사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교사 : 피해 · 가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 피해 · 가해학생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파악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전 사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 내용을 상황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및 자치 위원장에게 보고
집중 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등 실시

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교폭력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학교폭력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시행할 예방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의 자문 실시)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

가. 책임교사

- 폭력 사안의 조사 방향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사안조사를 전반적으로 총괄. 피해 ·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의 진상을 조사
- 학교폭력 상황, 주위 학생 안전 및 질서 유지, 진행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

나. 보건교사

- 피해 · 가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조치 및 신속하게 피해학생을 파악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 긴급한 사안의 경우 119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학생 병원 이송 시 동승

다. 상담교사

- 책임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조를 요청한 경우, 피해 ·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
- 학생에 대한 조사과정 자체가 상담의 과정이므로 상담의 기본태도를 지키면서 조사를 진행함

4.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유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2조)

유의 사항

- 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가 사안 발생시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평소 학교내 학교폭력 실태, 학생생활지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 성폭력, 심각한 상해 등 신체적 폭력의 경우 보건교사가 초기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거로 보존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함

〈붙임〉 학교폭력근절 대책 관련 국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	시행일	주요 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개념 확대 ○ '사이버 따돌림' 정의 및 개념 추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 학부모 대상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 권고' 삭제 ○ 피해학생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보상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금지 ○ 가해학생 '10일 이내 출석정지'를 '출석정지'로 기간 제한 삭제 ○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병과 및 가중조치 ○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 가해학생이 조치 거부 및 기피시 추가 조치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 1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등 반영 ○ 국무총리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 및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 ○ 시·군·구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운영 ○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한 교원 징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기여한 교원 가산점 및 포상 ○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인력 지정 ○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요청 ○ 학교 전담기구에 교감 포함 및 역할 강화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자심청구 ○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예방법 근거 마련 ○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정보통신망 이용 및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통합관제와 관련된 조항 수용 ○ 가해학생과 동반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추가 ○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감)가 부담

05

부 록



부 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1] [법률 제11388호, 2012.3.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기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기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악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기해학생”이란 기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기해학생의 선도·교育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기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3.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4.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6>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제목개정 2012.1.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12.3.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기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를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기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2012.3.21>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기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2.3.21>
-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1.5.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2.3.21>
1. 삭제 <2012.3.21>
 2. 삭제 <2012.3.21>
-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2.3.21>
 -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1>

[본조신설 2009.5.8]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시사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주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6, 2012.3.21〉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3.21〉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12.3.21〉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12.3.21〉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1〉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2012.3.21〉
 -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3.21〉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3.21〉

-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2.3.21〉
-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3.21〉
 -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3.21〉
 -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12.3.21〉
 -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3.21〉
 -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3.21〉
- [본조신설 2012.1.26]

-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기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기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8, 2012.1.26>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3.21>

-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본조신설 2009.5.8]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内外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内外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2.3.21〉

제22조(벌칙)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3.21〉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2.3.21〉

부칙 〈제11388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록

【소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물러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決定)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짓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2. 나이
3. 주거
4. 행위의 개요
5.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6.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발부연월일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치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기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기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기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금마다 하여야 한다.
-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빙ゴ이나 그 밖의 시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은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 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제28조(원조, 협력)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동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동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은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기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 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제34조(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②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은 자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 ②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절 항고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還送)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자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염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의 선도

2. 소년의 선도 · 교육과 관련된 단체 · 시설에서의 상담 · 교육 · 활동 등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① 제49조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혐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시킬 수 있다.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돋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돋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종양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별칙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실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

- 법무부 발행위원
 - 김영문(부장검사/법질서선진화과)
 - 손영배(부장검사/법질서선진화과)
 -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정부청사 법무부(406호)
 - 02-2110-3317(Tel), 02-503-7068(Fax)
- 교육과학기술부 발행위원
 - 오석환(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 박현정(학교폭력근절팀사무관)
 - 김태환(창의체험활동지원팀연구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 02-2100-6978(Tel), 02-2100-699(Fax)
- 자녀안심운동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
 - 정용현(책임연구원)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4
 - 02-3453-5226(Tel), 02-3453-5228(Fax)

인쇄 : 2012. 3. (초판)

발행 : 2012. 3.

이 교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 무료 배포용으로 제작하였고,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 교재의 사용, 수정에 관한 권한은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있습니다.